#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61

발의연월일: 2021. 3. 12.

발 의 자: 안민석·강득구·김영호

박성준 • 서동용 • 이성만

정성호 • 조오섭 • 최종윤

홍성국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입주자,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 등에게 경비원 등 근로 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, 부당 한 지시 또는 명령을 금지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.

하지만 여전히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.

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 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실 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 현행법에서도 근무환경 개선 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에 근로 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 면서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5조제2항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#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에 경비원 등 근로 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① (생	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
	에 따른 지원사항에 경비원 등
	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
	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
	설치・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
	<u>있다.</u>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